

안 내 문

수 신 : 전체 교원

제 목 :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사례 및 제재 조치 안내

본 대학은 2013년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학생인건비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통합관리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 타 대학들의 ‘학생인건비 공동관리’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정밀 정산에 대비하고자 관련 규정 및 부정집행에 따른 제재 수위를 안내해드리니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‘학생인건비 공동관리’ 적발 시 연구책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, 학생인건비 잔액 반납,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대학 재정 손실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지침 :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(해당부분 발췌)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(이하 "지정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지정일 이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지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정취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수행한 연구과제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과제에 한 한다.)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

2. 관련공문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-600(2018.04.30.), 「2018년도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운영현황 점검 자료 제출 요청」
- 나. 교육부 학술진흥과-5828(2017.11.28.). 「대학 학생연구원 현황 제출 요청」
- 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-1233(2017.07.19.),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상 연구비 집행 현황 조사」
- 라.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-686(2017.04.21.),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자료 제출」
- 마.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-444(2016.03.08.),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자료 제출 및 지정 신청 안내」
- 바.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-633(2016.04.05.),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 대상 현장점검 계획 통보」

3. 공동관리사례

- 가.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
- 나.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
- 다.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
- 라.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 후 연구실 자체 행정원 또는 비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

4. 학생인건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

- 가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대학 전체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잔액 반납
- 나.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대학 재정 손실
- 다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(5년)
- 라. 기관 특정감사 수감(교육부 등)

붙임 한국연구재단 감사 사례(학생인건비 부분 발취) 1부. 끝.

-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장 -